

#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38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18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5년 10월 20일 김혜영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3256호)과 성흠제 의원이 10월 20일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3254호)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

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 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'서울원터페스타' 등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하고 있으며, '민간 축제 지원사업'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 주도의 다양한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.
- 최근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와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양적 성장에 따라 국내외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질적 성장도

함께 요구되는 상황임.

- 또한, 도심의 주요 공간을 활용한 축제가 증가하면서,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파 관리, 교통 통제, 시설 안전 등 안전관리 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- 이에 안 제16조에 민간축제 반복지원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, 안 제18조에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는 교통 관리 대책의 적정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특정 단체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,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,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(안 제16조제5항)

나.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평가 항목에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을 추가(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의 경우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,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. 다만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

제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제10호의 적용은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축제의 지원 · 육성) ① ~ ④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6조(축제의 지원 · 육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의 경우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,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.</u> 다만 성과 우수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18조(축제의 평가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량적 · 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 제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8조(축제의 평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교통관리 대책의 적정성</u></p> <p><u>④ 제3항제10호의 적용은 교통통제가 수반되거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축제의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<u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</p>
<p>④ (생 략)</p>	